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요약보고서

2022. 9. 7.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1. 개요

- 2022. 6.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안건에 관한 논의가 속행되었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내용 위주로 발췌하여 보고함

2. 바람직한 항소심의 기능 및 1심과 항소심의 역할 분담

- 속심제의 본래 모습에 부합하는 운영을 통하여 사실심을 충실화하면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종국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여 1심의 충실화와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형사소송에서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표로 하여 1심의 충실화와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결국, **항소심 재판제도의 개선은 1심의 충실화를 기본적으로 전제**
 - 1심 충실화 방안에 관하여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소액사건 처리 방식의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음

3. 민사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가. 항소이유서 제도의 도입 : 민사소송법 개정사항

1) 현재의 재판실무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007. 11. 28.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 제도 도입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항소기록 접수 직후 항소인에게 통상 3주 이내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항소인이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에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준비서면과 다를 것 없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석명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특히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교체되어 사건 파악이 미비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등도 드물지 않음 ⇨ 이 경우 피항소인 측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인 측이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항의함

■ 2016. 8. 1.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도 도입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피항소인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항소인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보임



2)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의 필요성

■ 제도의 취지

- 항소제기 시에 원판결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지만, 항소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사실인정의 잘못을 포함하여 원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있음 ⇨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하여 항소인으로 하여금 불복한 이유를 명백히 하게 할 필요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항소제기 후 일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함(다만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 항소이유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 쟁점을 조기에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순차적으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진할 수 있음
 - 항소심 재판장으로서의 항소인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여 1심 소송기록을 요령 있게 파악하여 어느 정도 심리의 방향을 정하고 1회 기일에 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항소인으로서의 불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재판부의 주의를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피항소인으로서의 방어의 목표가 명확하게 되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처리기간 장기화, 미제분포지수 악화 추세 개선 필요

- 2010년부터 2021. 11.까지 약 10년간 민사항소사건의 평균처리기간, 미제분포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



연도	고등법원		지방법원 항소부	
	평균처리기간	미제분포지수	평균처리기간	미제분포지수
2010년	241.2	84.3	180.1	94.2
2011년	257.6	82.3	179.3	93.9
2012년	265.4	81.6	196.3	92.6
2013년	269.6	79.7	204.8	91.2
2014년	286.1	76.5	215.8	91.2
2015년	295.5	74.8	218.8	89.4
2016년	287.5	75.1	220.2	90.4
2017년	277.9	73.1	220.2	88.2
2018년	266.0	70.8	235.0	89.0
2019년	272.7	73.0	248.8	87.3
2020년	292.0	70.0	279.4	83.8
2021년 11월까지	301.4	67.6	302.5	80.1

- 특히 지방법원 항소부의 평균처리기간, 미제분포지수 악화 추세는 심각한 수준
- 이와 같은 평균처리기간 악화의 핵심적 원인으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인력의 만성적 부족 상황을 들 수 있으나, 인력난 해소는 중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송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 형사항소절차와의 균형성

- 당사자의 절차상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형사항소절차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민사항소절차에는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균형성을 상실한 것

3) 분과위원회의 건의사항

-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장가능)**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단,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 2007. 11. 28.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 8. 1.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항소심 1회 기일이 지정 될 때까지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회 기일 역시 공전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항소사건의 쟁점이 조기에 정리**되어
① 조속한 1회 기일 지정 또는 1회 기일 전 조정·화해권고 가능, ② 항소심의 사전적 심리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절차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항소심 처리기간 단축 가능**
- 다툼 의지가 없는 사건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남항소의 폐해를 줄이고 피항소인의 이익 보호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는, 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심판 범위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②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실권효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완화된 형태의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법원이 추진했던 방안은, 항소심의 심판은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와 항소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고(직권조사사항은 예외),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실권효도 인정하는 방안이었음
-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범위로 한정**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실권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초기에 유력하게 제기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소액사건 판결이유의 기재 등 1심 충실화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구·추진할 과제**라고 의견을 정리함



4) 비교법적 검토

■ 미국 연방법원의 항소심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이유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항소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피항소인은 항소각하신청 가능
- 피항소인의 답변서 미제출시 법원의 허가 없이는 구두변론 못함
- 남항소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항소라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면서 강력한 제재금(소송비용의 전부, 2배 또는 실손해 등) 부과

■ 독일

-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을 구체화 하고, 2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함(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연장 가능) ⇨ 미제출시 변론 없이 항소 각하 가능
- 항소심의 독자적 실권효 규정 존재

- 그밖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은 완전한 사후심이거나 사후심적 성격이 매우 강한 형태로 운영되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5)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 ③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신설)

-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항소기각) (신설)

- ① 항소인이 제400조의2의 규정을 어기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등) (개정)

-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적지 아니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보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규칙에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부제출시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 신설 : 민사소송규칙 개정사항

▣ 제안의 취지

- 실무상 항소인에게 일정기간 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는바, 항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 둘 것을 건의
 - 항소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소이유를 적은 준비서면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회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주의적 규정을 둬
 - 변론종결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규정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나, 당사자의 소송지연에 대한 경고와 재판부의 주의 환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항소이유서 도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전 조치에 관한 사항임

■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제126조의2(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개정)

- ① 재판장등은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③ 항소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비서면을 재판장등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4. 형사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가. 1심판결이유 인용범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사항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문제점



-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적용 이하 부분은 인용할 근거가 없음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한,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법령의 적용, 신상정보등록 관련 기재, 쟁점이 아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부분 등)의 인용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 없음
- 민사소송법 역시 1심판결 인용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참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선방안

■ 개요

- 형사항소심 판결 작성에 있어서 1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외의 부분도 인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함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되, 항소심의 쟁점이 아닌 부분(법령의 적용, 신상정보등록 관련 기재, 쟁점이 아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부분 등)을 인용할 수 있게 함 ⇨ 항소심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원심판결을 필요한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형사 항소심에서의 무변론항소기각 활용: 비입법사항

■ 개요



-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실무상 활용이 저조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의 의미를 실무제요, 형사항소심판결서작성실무, 재판업무길라잡이, 형사재판연수자료 등에 구체화하거나, 형사소송규칙에 예시적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필요
 - 처단형의 하한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법리오해 항소사건 등

■ 기대효과

- 1기일 당 넣어야 하는 사건 수를 줄여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나 장시간의 법정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할 시간을 확보하고 기일을 진행할 사건들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부수적으로 피고인소환 및 조서작성 등 업무량 경감도 도모할 수 있음

다. 피고인 구속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론화 촉구

1) 현재의 재판실무

■ 현행법상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 규정

-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음.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



신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92조 제1, 2항).

-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함(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연도	구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합의	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1심 합의	1심 단독
2000	구속	85.1	66.9	79.0	97.3	66.9	73.0
	불구속	97.3	149.0	167.2	142.9	112.5	112.5
2010	구속	90.5	65.0	80.7	70.9	63.4	51.6
	불구속	118.8	109.2	109.0	123.6	165.1	109.8
2020	구속	131.3	105.2	124.0	95.4	59.7	43.2
	불구속	194.2	159.4	204.5	233.6	196.1	120.0

- 고등법원의 경우 2020년의 통계를 2000년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구속사건은 45.0일(56.9%), 불구속사건은 37.3일(22.3%)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구속사건은 43.3일(53.6%), 불구속사건은 95.5일(87.6%) 증가하였음
-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2020년의 통계를 2000년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구속사건은 1.9일(2.0%) 감소하였으나 불구속사건은 90.7일(63.4%)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구속사건은 24.5일(34.5%), 불구속사건은 110.0일(88.9%) 증가하였음
- 2020년의 경우 불구속사건은 구속사건에 비해 고등법원에서는 80.5일(64.9%),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138.2일(144.8%)이 추가로 소요됨

2) 구속기간 제한 완화 필요성

▣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한 재판진행의 어려움



- 위와 같은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미결구금의 장기화를 억제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간의 심리를 요하면서 구속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경우 재판진행에 애로사항을 낳음
 - 예를 들어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으로 인하여 심리 및 판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구속기간제한을 이유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보석허가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진실 발견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구속기간 내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모두 완료하려면 무리한 일정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음
 - 보석제도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절한 운용으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보석조건 위반시 보석취소 후 구속재판을 하는데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심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사실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 2심을 통틀어 필요한 만큼 심리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구속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느라 불구속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음

3) 구속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 ▣ 피고인구속제도의 개선은 1, 2, 3심을 통틀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추진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문제인바, 분과위원회에서는 개선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항소심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함



5. 항소법원 단일화

가.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

▣ 항소법원의 개요

- 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모두 관장하는 항소법원 신설 ⇒ 고등법원과 지법항소부로 이원화된 현 체제 개편
- 항소심 통일화로 사법접근성 제고 및 절차적 만족감 부여

▣ 찬성론

- 국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항소심의 통일화로 인한 승복률 제고
 - 단독항소 사건의 당사자에게 항소법원에서 재판받았다는 절차적 만족감 부여
 - 대등재판부에 의한 항소심 재판으로 항소 재판에 대한 신뢰도 증가
 - 장기적으로 소송비용 절약 및 사법낭용 방지
- 심급구조의 명확성 확보
 - 단독사건을 동일한 법원에서 2번 재판(1심, 항소심)하는 문제점 해소
 - 현재 32곳에 산재한 항소심 담당법원이 14개가량의 항소법원으로 재편
- 1심 단독사건 확대(2억원→5억원)에 따라 합의사건 항소심과 단독사건 항소심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현재의 추세에도 부합
 - 법조일원화에 따라 원칙적 1심 단독화가 실현되면 이에 맞추어 단일한 항소심 법원으로 일원화 필요
- 이상적 사법부 설계 위한 제도적 기반
 -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고법판사 증가, 재판연구원 증원)
 -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통합한 전문재판부 운영으로 전문성 증대
 - 항소법원과 함께 민사항소심(소액 제외)에 대한 사후심적 요소 도입으로 바람직한 항소심 모습 설계 가능



▣ 반대론

● 조직 비대화 및 예산 문제

- 인구, 국토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자릿수의 항소법원은 너무 많음
- 지방법원 구조 개편시 추가 항소법원 설치 요구 우려
- 1심 강화, 항소심의 사후심화, 교통 및 통신발달, 전자소송 확대 등의 장기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항소법원을 다수 설치하여 사법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약함
- 법원장 등 고위직 증설 비판 예상, 청사 신축 내지 증설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

● 고등법원에 비해 항소심의 권위가 떨어지고 항소 및 상고 급증 우려

● 법령해석의 통일성 문제

- 심급제도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형 구조를 통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것인데 원통형의 항소법원 체제는 불합리함

● 항소심의 자원 집중으로 인한 1심 약화

- 항소법원 관할·규모 확대와 법관인사 이원화 진행으로 항소심에 자원이 편중
- 항소심 자원 편중 ⇒ 1심 약화 ⇒ 항소사건 증가로 인한 더욱 비대화의 악순환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지방법원 판사들의 사기 저하

- 단독항소심 부장 보직 130여개를 고법판사가 차지하게 되어 지방법원 법관들이 합의부 부장을 맡을 기회가 줄어들게 됨

▣ 설문조사 결과

- 장기적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하여 항소법원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데 법관은 70.1%, 변호사는 65.4%가 동의하였음

▣ 분과위원 의견

- 시기의 문제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을 항소법원으로 단일화함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나. 항소법원 설치방안



1) 항소법원의 명칭

■ 1안: 항소법원

● 장점

- 항소심을 단일화한 새로운 심급법원임을 명확히 함

● 단점

- 고등법원이 1심으로 처리하는 사건 존재
- 국민들에게 생소한 개념, 항소법원의 권위가 떨어질 우려

■ 2안: 고등법원

● 장점

- 기존에 합의사건만 심리하던 고등법원에서 단독사건 항소심도 심리한다는 인식을 주어 국민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음
- 소액사건의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진행할 여지 남겨둘 수 있음

● 단점

- 새롭게 정비된 법원이라는 인식이 약해짐
- 법원고위직 증설 노력으로 오인될 우려(검찰의 고등검사장 자리 증설과 연관)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1안(항소법원) 채택에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

2) 적절한 항소법원의 수

■ 2011년 정책용역연구팀안

방안	항소법원 수	항소법원의 설치지역	비고
1안	5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기존 고등법원 소재지
2안	6	위 5곳 외 제주	제주 추가
3안	7	위 6곳 외 강릉	제주, 강릉 추가



4안	10	위 7곳 외 전주, 청주, 인천/수원(택일)	제주, 강릉, 전주, 청주, 인천/수원(택일)
----	----	--------------------------	---------------------------

-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주, 강릉, 수도권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2년 법원행정처 심급개편 TFT 검토안

- 비수도권에 10개 (8대 생활권 + 창원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생활권대로 재판 원칙: 1생활권 1항소법원 원칙에 의하면 8개[충남(대전), 충북(청주), 전남(광주), 전북(전주), 강원(춘천), 경남(부산), 경북(대구), 제주]
 - 창원항소법원 설치: 부산고등법원이 경남의 한쪽에 편재되어 있음. 현재 원외 재판부 중 가장 큰 규모임
 - 울산항소법원 설치: 1생활권 1항소법원 설치 원칙이 훼손되기는 하나 울산이 광역시임 고려. 수도권과 동남권의 인구밀집성 고려 1생활권 1항소법원 원칙 예외 인정
 - 강릉지원 항소부의 유지 여부(폐지): 강원도 지역에 춘천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외에 강릉지부를 둘 실익이 부족(도로망 확충됨, 사건 수 과소). 1생활권 1항소법원 원칙 적용(도로망 발달로 실질적 1생활권)

● 수도권에 대한 검토안

	1안	2안	3안	4안
서울	서울항소	서울항소	서울항소	서울항소
의정부	의정부항소	서울항소	서울항소 의정부지부	서울항소 의정부지부
인천	인천항소	서울항소	서울항소 인천지부	서울항소 인천지부
수원	수원항소	서울항소	서울항소 수원지부	수원항소

- 1안: 서울항소법원/의정부항소법원/인천항소법원/수원항소법원 설치 방안
 - 장점: 수도권의 인구 및 사건수 규모에 부합(수도권 항소사건 수는 전체 항소사건의 약 60%). 서울항소법원의 과도한 비대화 방지. 경기도는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점 고려
 - 단점: 수도권에 4개의 항소법원이 설치됨. 경기도의 경우 1자치단체에 2항소



법원이 설치되는 예외를 인정하게 됨

- 2안: 서울항소법원만 존치시키는 방안

- 장점: 법령의 통일성, 항소법원의 위상 고양
- 단점: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심화, 청사 구할 수 없음(물리적 불가능)

- 3안: 서울항소법원 외에 서울항소법원 의정부인천·수원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 장점: 관할의 큰 변동 없음
- 단점: 서울항소법원의 사법행정적 비대화(전체 항소법원의 60% 업무 담당)

- 4안: 서울항소법원, 서울항소법원 의정부지부인천지부/수원항소법원 설치 방안

- 장점: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문제를 감소
- 단점: 의정부항소법원, 인천항소법원 설치 요구 가능

- 종합적 검토

- 수원을 관할하는 수원항소법원 설치: 인구 규모, 경제력, 사건 수 등 고려(수원지방법원 관내 사건 비율은 사법부 전체의 12.1%에 이르러 대전, 대구, 광주 관내 사건보다도 월등히 많음). 현재 수원고등법원 설치되어 있음
- 의정부, 인천을 관할하는 항소법원: 독자적인 항소법원을 설치할지, 서울항소법원 지부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나, 인구 규모나 사건 규모로 보아 별개 항소법원으로 설치가 바람직

- **분과위원회 의견: 1안(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항소법원 설치안)**

- 인구수, 항소대상 사건 규모 등을 고려 시 수도권 내 4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성 있음
- 지부로 설치 시 다른 항소법원보다 더 큰 조직이 되어 사법행정적 운영 문제

■ 최종적인 항소법원 숫자 : 14개

● 비수도권 : 종국적으로 10개

- 수도권 제외한 8대 생활권역: 설치
-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관내 항소법원: 설치
- 설문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10개 항소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의견이 법관은



69.4%, 변호사는 55.6%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 수도권 : 종국적으로 4개
 - 수도권은 청사 사정에 따라 순차적 진행
 - 이행기: 3개 항소법원(서울, 수원, 인천) + 5개 지부(동, 남, 북, 서, 의정부)
 - 완성기: 4개 항소법원(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 서울고등의 합의항소심 중 일부가 의정부로 이전
 - 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의 단독항소심이 서울항소법원으로 이전
 -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4개 항소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의견이 법관은 72.4%, 변호사는 61.4%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다. 항소법원의 인적 구성

1) 항소법원의 인적 구성 원칙

■ 항소법원의 역할 지향점

- 항소심 재판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신뢰 확보 필요
- 항소심 법관의 실질적 3자 합의에 의한 재판
- 분쟁의 종국적 해결

■ 항소심의 대등경력자 배치방안 필요

- 대등합의부는 경력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경력자들로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
- 재판부 구성은 다양성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같은 재판부 내에서도 기수와 연령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의 항소심 모델



	독일식(순환근무)	네덜란드식(이원화)	영국식
승진 구조	고법배석→지법부장→고법부장	지법부장→법원장 고법배석→고법부장	1심 판사와 항소심 판사는 선발 절차가 완전히 분리
특징	고법배석 후 지법부장 발령 지법부장 중 일부 고법부장 승진	지법판사 후 지법부장 내지 고법배석을 선택, 이원화	실질적으로는 고급법원 법관이 항소심 법관으로 승진 발령 다수
장점	제1심 강화	항소심 강화	경력 많은 변호사의 법원 진입이 수월
국가	독일, 일본, 이원화 이전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원화 이후 한국	영미식 국가

2) 현재의 사법부 인적 구성과 경력 상향된 항소법원 구성 가능 여부

■ 현재의 사법부 인적 구성

- 현재 법관 현원¹⁾ 2,881명 중 1심에 2,431명(84.4%), 2심에 352명(12.2%), 대법원에 97명(3.3%)의 법관이 근무 중
- 2021. 5. 1. 기준 지방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포함) 이상 1,433명(48.5%)

구분	인원	비율	경력
판사	1,524	51.5%	15년 이상
지법부장(법원장, 지원장 포함)	1,114	37.7%	
고법판사	213	7.2%	
고법부장 이상(법원장 포함)	106	3.6%	
합계	2,957	100%	

- 심급별 필요 경력법관(15년 이상) 인원²⁾

심급	재판부	인원
1심합의(부장)	216	216
단독항소(대등)	126	378
합의항소(대등)	103	309
계		903

■ 1심 재판장과 동급으로 항소법원 대등합의부 가능 여부

1) 2020. 12. 31. 기준

2) 2020년 기준으로 합의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고등법원 재판부를 기준으로 했고, 합의사건 1심 및 단독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재판부 숫자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했음



- 현 단계에서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지방부장급 이상 법관 총 1,433명
 -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 항소심 대등합의부에 필요한 법관 숫자는 687명
 - 1심합의부, 재판연구관(부장), 기타 비재판부 보직을 감안하여도 지방부장급 이상 법관으로 항소심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대등합의부로 변경
- 문제점
 - 일시에 중견법관이 항소심으로 이동하는 경우 1심의 약화를 초래
 -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1심법관의 재판역량 약화
 - 1심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음
 - 단독항소심을 항소법관이 맡게 되어 지방법원 법관들의 자긍심 손상
 -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항소법관 지원자 부족 우려³⁾

3) 항소법원 인적구성 방안

▣ 순차적으로 항소법원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급 법관으로 변경

- 인력 구조 운영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음
- 일시에 항소법원 법관을 일정 경력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1심의 공동화 초래

▣ 이행기 동안 항소법원 내 단독항소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

- 합의사건 항소부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경력대등 재판부로 구성(사건별 재판장 지정)
- 단독사건 항소부는 재판장 외에는 법조경력 15년 이하의 지방법원 법관도 포함하되 점차적으로 지법부장급 이상으로 경력을 상향하는 방안 (재판장

3) 2020년 기준으로 고등법원 판사 353명 중 55명이 고법판사가 아님



고정)

- 법조 일원화, 1심 단독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
- **대등재판부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항소법원 내에서 단독항소 배석 ⇒ 합의항소 배석 ⇒ 단독항소 재판장 ⇒ 합의항소 재판장의 순서로 보직을 맡는 방안도 가능**

- 재판장을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일 뿐 실질적 대등재판부로 운영
- 배당비율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AHH, PHH의 배당비율과 같이 1 : 2 : 2
- 항소법원 근무 기간을 15년으로 예상하는 경우 근무 패턴

합의항소 배석	단독항소 부장	합의항소 부장
7~8년	4년	3~4년
11~12년		
항소심 근무 기간: 약 15년		

■ **항소법원의 인력 증원**

- 항소법관 증원에 따라 이원화 완성기간 연장
 - 일부는 초임부장 무렵, 일부는 상당기간 1심 부장 근무 후 선발
 - 고법판사 선정시기를 이원화하여 1심과 항소심 사이 적절히 인력 분산
 - 고법판사 부족 문제는 지방법원 판사를 일시적으로 항소법원 주심판사(1심 단독사건만 전담하는 항소부에 배치)로 근무하도록 하고 고법판사를 계속 충원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해결 가능
- 일정 경력 이상 항소법관 1인당 재판연구원 1인 확보

■ **분과위원회 논의**

- 항소법원 설치가 법관인사 이원화의 안착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현행 법관 인사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항소법원 판사예의 지원 편중, 1심 사법자원 공동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 향소법원 설치로 향소법원 판사의 수가 늘면 현재의 고법판사 선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실제로 향소법원이 추진될 시점의 인력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현 시점에서는 향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과 검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외에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지는 아니하기로 함